

「20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소재 뿌리업종 관련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지원수요에 따른 선택적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력 확보와 매출도약 지원으로 자발적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중소·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5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 공고/접수기간 : 2023년 7월 5일 ~ 2023년 7월 21일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
 - ※ 기타 참여 자격요건은 ‘Ⅲ.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참조
- 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기술개발, 시제품, 사업화, 근로환경개선)
-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II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30일 이내(예정)
- 지원금액 :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30백만원 지원

구분	채용약정 인원	지원 금액	비고
지원금액	1인	15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0%
	2인	30백만원 이내 지원	이상 구성필요
사업비 구성 예	사업비 3,750만원 = 정부지원금 3,000만원(80%) + 기업부담금 750만원(20%)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 지원내용 : 뿌리기업 지원수요에 따른 패키지형 지원
 - 지원범위별 공급기업을 신청기업이 사전에 지정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구분	지원 범위	지원 가능 항목
기술 지원	시험분석 지원	·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비 지원 ex) 인장시험, 피로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 국내대학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시험비만 인정
시제품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위탁비용 지원
사업화	디자인개발	· 제품, 포장, CI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지원
	홍보영상 및 사진	· 회사 및 제품 홍보동영상, 사진촬영 및 제작비 지원
	박람회 참가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참가부스 설치비 지원
근로 환경 개선	근로 환경 개선	렌탈비용 지원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 안전 확보 지원	비용 지원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헬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 시제품 제작은 'I-Mate(www.imate.or.kr)' 에서 공급기업 검색 가능

* 공사관련 사업 신청 시 현시점의 평면도와 개선 후의 평면도 제출(자유 양식)

III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 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위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 인정

- 참여기업 자격요건 (1개 이상 충족)

1. 영업이익 감소 : 직전 3개년도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19년, 2020년,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2. 고용감소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평균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감소
3.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

1.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한 자
4.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주40시간 월 최저임금기준)
5.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닌 자
6.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동일기업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이력이 없는 근로자
8. 신규채용 약정인원 :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 제약 없음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외인 경우 : 근로자의 주민등록거주지를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제한함
9.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신규 채용한 약정인원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1. 인천광역시 소재의 '뿌리기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3년 동안 평균영업이익 대비 시작년도(2020)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
 - 직전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 평균 대비 시작년도(2020) 고용이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 분야 기업
3.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6.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7.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기 지원된 과제(중복지원)의 경우
8. 2022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9. 지원 금액에 맞는 신규 채용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11. 뿌리산업일자리센터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2. 『2023년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에서 '뿌리기업 기업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3. (공사지원시)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상 허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14. (근로환경개선 지원 항목 선택 시) 당해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5. 결산자료 기준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16.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17.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8.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9.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자본 보조적 지원 등)

IV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7월 5일 ~ 2023년 7월 21일/ 예산 소진(목표 고용창출 완료)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No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1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 1]
	2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채용약정서 1부 ※ 현 문제점 분석 및 지원에 따른 개선 기대목표 등 명확히 작성/ 현장평가 시 질의 및 평가 반영	[서식 2]
	3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서식 3]
	4	공장등록증 1부 (사본)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 '21, '22) 각1부 (사본) ※ '22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기간 : 2022.12.31. ~ 2022.12.3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사본)	
	7	표준재무제표('20, '21, '22) 각1부 (사본)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 '20, '21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8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9	주관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본)	
	10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사본)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2	공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관련의 경우 현시점의 평면도 및 개선(목표)평면도 첨부	자유양식
선택 (해당사)	1	서류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1개에 대해 3점 인정 -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현장평가 가점 서류 각1부 (사본), 최대 2개에 대해 10점 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 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단, 인증 및 유효기간 내의 가점서류만 인정	

- 추진절차

추진 단계	주요 내용
1 모 집 공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모집 - 비즈오케이 (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2 자 격 심 사 / 서 류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격심사 및 서류평가 진행 (평가위원 1인)
3 현 장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장평가 진행 (평가위원 2인)
4 원 가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
5 협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P ↔ 주관기업 협약 체결
6 사 업 수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선도·모듈형 기업지원사업 수행
7 최 종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및 사업성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및 채용 확인
8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성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채용약정 인원 관리 및 만족도조사 실시

○ 선정방법

-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정 위원회’의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적절성 심사, 참여기업 선정 (총사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자격심사/서류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

- 자격심사/서류평가 : 외부전문가(1인)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신청자격 요건 해당 여부 평가(결격사유 점검 등)
 - 자격심사 : 모든 자격심사 항목을 통과해야 적합
 - 서류평가 :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 기한 내 적정서류 미제출 및 별도요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장평가 : 외부전문가(2인)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시급성, 사업비 적정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조정 및 확정,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최종 선정

※ 동점 시 선정 기준 : ‘①지원시급성 ②사업계획 적정성 ③사업비 적정성’ 고득점 순

평가지표		평가방법	비고
자 격 심 사	뿌리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기업 -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받은 기업 	적/부
	참여대상 기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적합 - 영업이익 감소 : 직전 3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이 시작년도 영업이익 대비 감소한 기업 - 고용감소 : 직전 3개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이 시작년도 말 대비 감소한 기업 - 위기산업군 :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장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적/부
	상시 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합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준 	적/부
	기업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재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천(제조시설 기준)일 경우 적합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준 	적/부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 적합(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부적합)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적/부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적합 -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적/부
	국세 및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적/부
	4대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적/부
자격심사 항목 모두 적합 시 통과			통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서류평가	업력유지	■ 뿌리기술 활용 업력 평가(사업자등록증 기준)	10점
	영업이익	■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업이익 평균 대비 2020년 영업이익 비율 - 표준재무제표 기준, 20년 대비 '20년, '21년, '22년 영업이익 평균	10점
	이자보상 배율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 표준재무제표 기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매출액 영업이익율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기준, '20년, '21년, '22년 평균	10점
	유형자산 증가율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유형자산 증가여부 - 표준재무제표 기준, '20년 대비 '20년, '21년, '22년 유형자산 평균	10점
	연구개발 비율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연구개발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기준, '20년 대비 '20년, '21년, '22년 유형자산 평균	10점
	고용증가율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고용증가율(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20년 말 상시 근로자 수 대비 '20년, '21년, '22년 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20점
	청년근로자 장기근속률	■ 5년 이상 장기근속 여부(39세 이하 청년 5년 이상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2년 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 - 업력기준 5년 미만 사업장은 최고점처리	20점
	가 점	■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여부(최대 1개에 대해 가점 3점 인정) -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 지역위기산업(가점 3점) - 뿌리산업 중 기반공정기술 분야(공장등록증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업종 분류코드 기준)	-
	서류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항목별 배점은 서류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사업적정성	■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절성/실현가능성	40점
	지원시급성	■ 사업 후 기대효과	20점
	사업비적정성	■ 공급기업 컨소시엄 적절성, 지원항목별 사업비 적절성	40점
	가 점	■ 가점 서류 1개당 5점, 최대 2개 10점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인천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 리기업)	-
	평가위원 2인의 현장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 원가분석 :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원가분석 결과가 사업비 대비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원가분석비용 ITP 부담)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ITP ↔ 주관기업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 최종평가 및 채용확인

- 최종평가 : 외부전문가(2인)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적절성, 수행목표 달성수준 등을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사업 성공, 미만일 경우 사업 실패 (채용약정 미준수시 사업 실패)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최 종 평 가	사업비 집행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25점
	수행목표 달성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달성도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약정 신규인력 운용의 적절성 	25점
평가위원 2인의 최종평가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100점

- 채용 확인 : 협약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 내에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의 근로자 채용 확인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주요 내용
1	최종평가 (ITP→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 시 성공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제 실패
↓		
2	채용약정인원 채용확인 (ITP→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약정인원 채용 확인 - 신규 채용약정 인정조건의 근로자 채용 확인
↓		
3	정산보고서 검토 (ITP→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액 확정 - 확정 지원금 통보
↓		
4	지원금 지급신청 (주관기업→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업 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요청서, 주관기업 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		
5	지원금 지급 (ITP→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업으로 확정 지원금 지급

○ 지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을 충분히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식파일은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참고

V 문의사항

-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연 락 처 : (Tel) 032-260-0691~2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1. 주조산업 (1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1	주철관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230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열처리산업 (2)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공업용로, 전기로

4. 표면처리산업 (1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8909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10)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	용접봉
26224	전자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9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3)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1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기타종이가공기계

11. 로봇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